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가단713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45,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C 주식회사 보험설계사인 피고의 권유로 연금 적립식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2011. 12.

2.부터 2018. 12. 5.까지 합계 52,045,296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모두 인출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였다거나 원고의 보험료를 모두 인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